

A history of leadership

2021학년도 재외국민과외국인전형 모집요강

2020. 5.

건국대학교 입학처

목 차

I.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1
II. 전형일정	2
III. 지원자격	3
IV. 전형방법	7
V. 선발원칙	10
VI. 제출서류(자기소개서 견본 양식 포함)	11
VII.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15
VIII. 지원자 유의사항	16
IX. 전형료 및 환불 안내	18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입학처

문 의 전 화 : (02) 450 - 0007
전 송 (FAX) : (02) 450 - 0077
홈 페이지 : <http://enter.konkuk.ac.kr>
이 메 일 : enter@konkuk.ac.kr

I.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대학	모집단위	계열 구분	최대모집 가능인원	모집인원	대학	모집단위	계열 구분	최대모집 가능인원	모집인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인문	4	6	경영대학	경영학과	인문	7	7
	영어영문학과		6			기술경영학과		3	
	중어중문학과		3			부동산과학원		부동산학과	
	철학과		3		KU융합과학 기술원	미래에너지공학과	자연	4	6
	사학과		3			스마트운행체공학과		4	
	지리학과		3			스마트ICT융합공학과		4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3			화장품공학과		4	
	문화콘텐츠학과		3			줄기세포재생공학과		4	
이과대학	수학과	자연	3	3	의생명공학과	4			
	물리학과		3		시스템생명공학과	4			
	화학학과		3		융합생명공학과	4			
건축대학	건축학부	자연	3	3	상허생명 과학대학	생명과학특성학과	자연	4	6
공과대학	사회환경공학부	자연	10	10		동물자원과학과		4	
	기계항공공학부		10			식량자원과학과		4	
	전기전자공학부		10			축산식품생명공학과		4	
	화학공학부		10			식품유통공학과		3	
	컴퓨터공학부		10			환경보건과학과		3	
	산업공학과		3			산림조경학과		3	
	생물공학과		3			수의과대학		수의예과	
사회과학 대학	정치외교학과	인문	3	10	예술디자인 대학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예체능	3	6
	경제학과		8			산업디자인학과		3	
	행정학과		5			의상디자인학과		3	
	국제무역학과		5			리빙디자인학과		4	
	응용통계학과		4			현대미술학과		3	
	융합인재학과		3			영상영화학과		4	
	글로벌비즈니스학과		2			영상영화학과-연기		1	
	서울캠퍼스 총계								

2. 지원자격 유형별 모집인원 (지원자격의 상세사항은 「Ⅲ. 지원자격」 참고)

유형구분	모집인원
유형 I (재외국민 및 외국인)	※ 위 표의 모집인원은 본교 입학정원의 2% 이내 에 해당하는 인원임 ※ 학과별 최대모집가능인원 범위 내에서 단과대학별 입학고사 성적순으로 모집인원을 선발함 ※ 경영대학과 부동산과학원의 단과대학 모집인원은 통합하여 7명 선발함 [예] 문과대학 모집인원 총 6명에 해당하는 1~6위 학생의 지원학과가 각각 국어국문학과 1명, 영어영문학과 1명, 중어중문학과 4명일 경우, 중어중문학과에서는 최대모집가능인원 제한에 따라 3명만 선발함 이로 인해 발생하는 1명의 미충원 인원은 중어중문학과를 제외한 문과대학 나머지 학과의 차 순위자로 선발함
유형 II(전 교육과정 이수자)/ 유형 III (북한이탈주민)	※ 입학고사 성적순으로 모집단위별 수용 범위 내에서 대학의 수용조건 및 지원자의 수험능력을 고려하여 약간 명씩 별도 선발함 단, 유형 II, III의 수의예과 선발은 유형 II, III을 통합하여 최대 3명으로 제한함
공통	※ 본교의 모집단위 및 전공 명칭과 모집단위별 최대모집가능인원은 2021학년도 편제 및 정원 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재외국민과외국인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은 변경된 편제에 따라야 함 ※ 공학계열 중 일부 학과에서는 한국공학교육인증원(ABEEK)의 공학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학과 학생은 졸업하기 위하여 공학인증 이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II. 전형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인터넷 원서접수		2020. 7. 20.(월) 10:00 ~ 7. 22.(수) 17:00	· 원서접수 사이트를 통해서만 접수
서류제출	방문	2020. 7. 20.(월) 10:00 ~ 7. 23.(목) 17:00	· 기간 내 평일 17:00까지 제출 가능 · 원본 제출이 불가피한 경우 원본과 사본을 함께 지참하여 입학정보관 112호에서 원본대조 후 제출 가능
	우편		· 국내 우체국 소인은 7. 23.(목)까지 유효 · 해외우편은 7. 27.(월) 17:00 도착 분까지 접수
자기소개서 입력		2020. 7. 20.(월) 10:00 ~ 7. 23.(목) 17:00	· 유형II(전 교육과정 이수자) 지원자는 자기소개서를 입력해야 함 ·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입력
필기고사		2020. 8. 6.(목) 10:00~12:00	· 고사 2~3일 전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http://enter.konkuk.ac.kr)에 고사시간 및 장소 공고 · 유형II(전 교육과정 이수자)를 제외한 모든 지원자는 필기고사를 응시해야함
면접고사 대상자 발표		2020. 8. 11.(화) 10:00 예정	·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http://enter.konkuk.ac.kr)에서 조회 · 모든 유형의 예체능 계열 지원자와 유형II(전 교육과정 이수자) 중 수의예과 지원자는 면접고사를 응시해야 함
면접고사		2020. 8. 14.(금) 10:00~17:00	· 고사 2 ~ 3일 전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http://enter.konkuk.ac.kr)에 고사시간 및 장소 공고
전 계열 최초합격자 발표		2020. 9. 17.(목) 14:00 예정	·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http://enter.konkuk.ac.kr)에서 조회
예치금 등록		2020. 12. 28.(월) ~ 12. 30.(수)	· 추후 합격자 유의사항 참고
미등록 총원 (추가합격자 발표)		2020. 12. 31.(목) ~ 2021. 1. 4.(월) 21:00	·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http://enter.konkuk.ac.kr)에서 조회
잔여등록금 납부		2021. 2. 8.(월) ~ 2. 10.(수)	· 추후 등록금고지서 참고

- ※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 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으로 인해 자가격리 기간이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에 전형 일정을 확인 바람
- ※ 위 일정은 한국시간 기준이며 합격자 발표 등 전형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합격자는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하며, 합격통지서는 합격 확인 시 출력 가능함
- ※ 합격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예치금과 잔여등록금 납부를 모두 완료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통보 없이 합격이 취소됨
- ※ 연락처 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전화번호를 반드시 바르게 입력하고 변경 시 신속하게 수정하여야 함

Ⅲ. 지원자격

1. 지원자격에 따른 유형

유형	자격 구분	자격 요건	자격 세부 구분
유형 I	재외국민 및 외국인 (입학정원 2% 이내 모집) -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해외에서 중·고교과정 중 3년 이상을 수학한 해외근무자의 자녀로서, 하단의 유형별 상세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자	해외 파견 재직자 자녀
			현지 취업자 자녀
			현지 자영업자 자녀
유형 II	전 교육과정 이수자 (입학정원 제한 없이 모집 가능) - 초·중·고 전 과정 해외이수자	해외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하단의 유형별 상세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자	재외국민
			외국인
유형 III	북한이탈주민 (입학정원 제한 없이 모집 가능)	관계 법령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하단의 유형별 상세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자	북한이탈주민

* 졸업연도 제한: 유형 I의 경우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고등학교 졸업학년도 시작일로부터 2년 6개월 이내인 지원자만 지원가능 (단, 군 복무기간은 기간 산정에서 제외함)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개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학은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지원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

2. 유형별 상세 지원자격

가. 유형 I: 재외국민 및 외국인(입학정원 2% 이내 모집) -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 우리나라 학제(12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해외근무자의 자녀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구분	내용
해외 재학기간	·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년 이상
해외 체류기간	· 학생: 학생 해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 · 부모: 학생 해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해외 근무자 재직기간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해외근무/사업/영업

■ 해외 근무자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해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해외에 체류한 자
- 해외근무자가 해외근무/사업/영업이 아닌 유학, 교육·연수, 안식년, 출장 등의 목적으로 외국에 장기 거주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현지 자영업자의 근무기간은 해당국 세금납부기간으로 적용하되, 재외국민등록등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상에 나타난 출입국기록을 함께 고려하여 적용함

■ 해외 근무자의 자녀

-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해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 해외 재학기간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 해외 체류일수 조건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 출국일과 귀국일도 체류일수 산정 시 포함

■ 해외 재학기간 인정기준

- 학생의 외국학교 재학기간은 해외 근무자(부모 중 1인 이상)의 해외 근무기간(역년으로 통산 3년, 즉 1,095일 이상) 내에 해당국에서 재학한 기간만을 인정함
-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의 일반적 의미는 연속, 비연속 무관하며 통산 3년의 개념임

나. 유형Ⅱ: 전 교육과정 이수자(입학정원 제한 없이 모집 가능) - 초·중·고 전 과정 해외이수자

■ 해외 1개국 내 학제가 동일한 학교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자

-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방학, 해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 가능(출입국사실증명서를 확인하여 실제 외국학교 재학여부를 판단)
- 해외의 한 국가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 해외에서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학년제	인정 여부 및 인정 조건	비고
10학년 이하	미인정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11학년제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과정으로 인정	
12학년제	※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13학년 이상	10학년~12학년 또는 11학년~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 해당국 학년제의 총 이수 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간의 차이 연수

- 단,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

다. 유형Ⅲ: 북한이탈주민(입학정원 제한 없이 모집 가능)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해당하지 않음
 - 북한이탈주민이 탈북 과정 중에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는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지 않음
 -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출생 자녀 또는 국내 입국 후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는 해당하지 않음

3. 지원자격 인정기준

가. 졸업자격 인정기준 시점

- 자격인정 기준시점은 2021년 2월 28일로 함. 단, 해당국의 학제상 학기 개시일이 한국보다 1개월 늦은 국가(일본 등)는 1개월의 재학 예정기간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초과 인정함

나. 외국학교 소재지 인정기준

- 외국학교는 외국에 소재한 학교를 의미하며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 학교는 해당하지 않음

다. 외국학교 재학 인정기준

- 외국 학교과정은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중·고 대학과정과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함
 - 초등학교 과정: 외국의 1 ~ 6학년 과정(Grade 1 ~ Grade 6)
 - 중학교 과정: 외국의 7 ~ 9학년 과정(Grade 7 ~ Grade 9)
 - 고등학교 과정: 외국의 10 ~ 12학년 과정(Grade 10 ~ Grade 12)
- 부정·편법·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중복 학기 판단 예시

- 예시 1) 중복과 관련하여 지원자격 충족 사례

[D: 국내학교, A: 해외학교]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 기간	D	D	D	D					D	D	D	D	D				D	D	D					
				A	A	A	A	누락					A	A	A	A	누락				누락	A	A	A

중복학기 G2-2로
G4-2 대체 가능
 중복학기 G7-1로
G9-1 대체 가능
G11-1 학제차이로
인한 누락으로 인정

- 예시 2) 중복과 관련하여 지원자격 미충족 사례

[D: 국내학교, A: 해외학교]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 기간	D	D	D	D	D						D	D	D	D				D	D	D				
				A	A	A	A	누락	누락				A	A	A	A	누락				누락	A	A	A

중복학기 G2-2~G3-1 중 한 개 학기만
G4-2~G5-1 중 한 개 학기 대체 가능
 중복학기 G7-1로
G9-1 대체 가능
G11-1 학제차이로
인한 누락으로 인정

■ 외국 학교과정은 해당국 교육관계법령에 의거,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정규 학교과정만을 인정함

- 유아원, 유치원, 어학연수과정(ESL과정 포함), 대학예비과정, 평생교육기관, 성인대학, 해외 검정고시(미국·캐나다의 GED, 중국의 자학교시 등), 사이버학습, 홈스쿨링 등은 정규 학교과정으로 인정하지 않음
- 유형Ⅲ(북한이탈주민)만 국내 검정고시를 인정하고 유형Ⅰ, Ⅱ는 국내외 검정고시 모두 인정하지 않음

Ⅳ. 전형방법

1.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지원자격 유형	계열	전형 단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비고
			필기 고사	서류 평가	면접 고사	
유형 I 재외국민 및 외국인 (입학정원 2% 이내 모집) -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인문계, 자연계 (수의예과 포함)	일괄 선발	1,000점 (100%)	-	-	
		1단계	1,000점 (100%)	-	-	3배수 선발
	예체능계	2단계	1단계 성적 600점 (60%)	-	400점 (40%)	포트폴리오 면접
유형 II 전 교육과정 이수자 (입학정원 제한 없이 모집 가능) - 초·중·고 전 과정 해외이수자	인문계, 자연계	일괄 선발	-	1,000점 (100%)		
		1단계	-	1,000점 (100%)	-	※ 수의예과 :3배수 선발
	예체능계, 수의예과	2단계	-	1단계 성적 600점 (60%)	400점 (40%)	예체능: 포트폴리오 면접/ 수의예과: 인성면접
유형 III 북한이탈주민 (입학정원 제한 없이 모집 가능)	인문계, 자연계 (수의예과 포함)	일괄 선발	1,000점 (100%)	-	-	
		1단계	1,000점 (100%)	-	-	
	예체능계	2단계	1단계 성적 600점 (60%)	-	400점 (40%)	포트폴리오 면접

2. 단계별 전형 선발 배수

가. 유형 I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예체능계 1단계 선발배수(2단계 면접대상자 수)는 모집인원의 3배수임

나. 유형 II (전 교육과정 이수자), 유형 III (북한이탈주민)은 입학고사 성적순으로 모집단위별 수용 범위 내에서 대학의 수용요건 및 지원자의 수학능력을 고려하여 약간 명씩 별도 선발함. 단, 유형 II, III의 수의예과 선발은 유형 II, III을 통합하여 최대 3명으로 제한함

3. 전형요소별 세부사항

가. 필기고사(전 문항 객관식)

■ 과목별 문항 수 및 반영비율

고사과목 계열구분	영어 (50문항)	국어 (50문항)	수학 (25문항)	총합계
인문계/예체능계	50%	50%	—	100%
자연계	50%	—	50%	100%

■ 고사시간

고사과목 계열구분	영어 + 국어	영어 + 수학
인문계/예체능계	120분	—
자연계	—	120분

■ 출제 범위

고사과목	범위
영어	영어, 영어 회화, 영어 I, 영어 독해와 작문
국어	국어
수학	수학 I, 수학 II, 확률과 통계

나. 서류평가

■ 서류평가 진행방식

- 자기소개서와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인성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성평가함

■ 자기소개서 작성 및 제출 안내

- 지원자의 부모 및 친인척의 성명, 직장명 등의 인적사항은 기재 불가
- 자기소개서 온라인 제출(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입력하되 출력하여 오프라인으로 제출하지 않음)
- 제출된 자기소개서에서 표절, 대리 작성, 허위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합격 이후라도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다. 면접평가

■ 면접고사 평가방식

- 예체능계 포트폴리오 면접: 개별면접이며 포트폴리오 구술 및 간단한 실기테스트를 기반으로 인성,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유형 II (전 교육과정 이수자) 중 수의예과 면접: 개별면접이며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인성,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예체능계 포트폴리오 제출 안내

- 예체능계 지원자는 본교 소정양식에 따라 작성한 포트폴리오를 서류접수 기한 내에 지원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함
- 포트폴리오 양식은 원서접수 사이트 및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http://enter.konkuk.ac.kr>) 재외국민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지정된 양식만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 A3용지(297×420mm) 앞면에만 작성 가능하며 분량은 표지 제외 후 총 7매 이내로 엄격히 제한함
 - ※ 표지를 제외하고 앞에서부터 차례로 단면 7매만 인정하며, 나머지 자료는 일괄 폐기 처리함
- 각 장의 우측 상단에는 수험번호와 자료 제목을, 하단에는 현재 페이지/총 페이지를 기재해야 함
- 포트폴리오는 표지부터 페이지 순서대로 **A3 크기의 클리어파일에 넣어** 기타서류와 함께 서류제출 기한 내에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함
 - ※ 우편물 발송 과정에서의 분실 또는 유실에 대하여 본교는 일절 책임지지 않음
- 포트폴리오는 반드시 평면 형태로만 제출해야 함

[예] 본인 창작품 부착(평면만 가능), 본인 창작품 사진, 본인 창작품 스캔본, 작품 활동사진 등

V. 선발원칙

1. 유형 I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학과별 최대모집가능인원 범위 내에서 단과대학별 입학고사 성적순으로 모집인원을 선발함
2. 유형 II (전 교육과정 이수자), 유형 III (북한이탈주민)은 입학고사 성적순으로 모집단위별 수용 범위 내에서 대학의 수용요건 및 지원자의 수학능력을 고려하여 약간 명씩 별도 선발함. 단, 유형 II, III의 수의예과 선발은 유형 II, III을 통합하여 최대 3명으로 제한함
3. 기한 내 서류 미제출자(포트폴리오 미제출자 및 서류 미비자 포함), 지원자격 부적격자, 필기고사 및 면접고사 결시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함
4.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원을 무효로 하고 관계법령에 의하여 재외국민과외국인전형 입학자격을 박탈함
5. 합격 후 국내·외 전적 학교에 학적 및 거주사실 등을 조회한 결과, 서류 조작허위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입학 무효 처리되며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상기의 사유로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자가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음)
6. 재외국민과외국인전형 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는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7. 최종적으로 우리 대학을 포함하여 두 개 이상 대학에 이중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모든 대학의 합격이 취소됨
8. 기타 본 요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고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재외국민과외국인전형 사정원칙,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9. 입학 지원자가 성적 석차 순으로 모집인원 내에 해당하는 경우일지라도 그 성적이 본교에서 기대하는 학력수준에 현저하게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대학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입학을 불허할 수 있음

VI. 제출서류(자기소개서 견본 양식 포함)

1. 유형 I : 재외국민 및 외국인 -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번호	서류목록 [* 표시된 서류는 반드시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영사확인]	세부 구분			비 고
		해외 파견 재직자 자녀	현지 취업자 자녀	현지 자영업자 자녀	
1	입학원서	○	○	○	·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접수 후 출력
2	지원자 종합기록표	○	○	○	·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접수 후 출력
3	초·중·고 전 과정 성적증명서*	○	○	○	
4	초·중·고 재학사실증명서*	○	○	○	
5	중·고교 학사일정표 (School calender)	○	○	○	· 중·고교 3개 학년 재학을 산정하기 위해, 학기개시일/종료일이 명시된 학사일정표를 반드시 제출해야함 · 홈페이지 출력물도 제출 가능하나, 해당 웹사이트 주소(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함
6	고교 졸업(예정)증명서*	○	○	○	
7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 지원자]	○	○	○	· 부모 이혼, 사망 등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함
8	재외국민등록등본 [부, 모, 지원자]	○	○	○	· 해외 2개국 이상일 경우 해당국 모두 제출
9	여권 사본 [부, 모, 지원자]	○	○	○	· 해외 재학기간 중 여권번호가 변경된 경우, 구 여권과 신 여권 사본을 모두 제출
10	출입국사실증명서 [부, 모, 지원자]	○	○	○	
11	재직(경력)증명서 [부 또는 모]	○	○		· 해외 파견 재직자의 경우, 한국 본사에서 발급한 증명서로서, 소속부서, 직위, 파견국가, 파견기간(연월일) 명시
12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부 또는 모]		○	○	· 연월일 명시 · 해당자에 한해 제출
13	법인세 납부이력* 또는 해외 세금납부증명서* [부 또는 모]		○	○	· 연월일 명시 · 현지 취업자는 [법인세 납부이력] 제출 · 현지 자영업자는 [해외 세금납부증명서] 제출
14	포트폴리오 (예제능계)	서류접수 기간 내에 본교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			
15	외국 중·고교 학적조회동원서	○	○	○	· 입학처 홈페이지 재외국민 자료실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16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부, 모, 지원자]	○	○	○	· 출입국관리법 별지 138호의 2 서식

· 공통사항

- ※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원본과 함께 한글 또는 영문번역 공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 교육부에서 승인한 재외한국학교의 재학관련서류[성적증명서, 재학사실증명서, 고교 졸업(예정)증명서]는 아포스티유 인증 및 영사확인 생략 가능. 단, 이외의 해외발급 서류는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영사확인이 필요함
- ※ 자격심사 과정에서 외국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선발대상에서 제외됨
- ※ 면세자의 경우 세금납부증명 대신, 면세 대상임을 증명하는 공식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함
- ※ 기한 내 서류 미제출자(예술타일디자인대학 포트폴리오 미제출자 및 서류 미비자 포함), 지원 자격 부적격자, 필기고사 및 면접고사 결시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됨

· 지원자격

- ※ 해외 파견 재직자 자녀인 경우, 자격심사 시 필요에 따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또는 해당국세금납부증명), 해외직접 투자신고(수리)서 또는 해외지사(사무소)설치인증서 등의 제출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므로 지원자는 이에 대하여 적극 협조해야 함
- ※ 해외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인 경우, 자격심사 시 필요에 따라 보호자의 정부초청증명서 제출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므로 지원자는 이에 대하여 적극 협조해야 함

2. 유형Ⅱ: 전 교육과정 이수자 - 초·중·고 전 과정 해외이수자 / 유형Ⅲ: 북한이탈주민

번호	서류목록 [* 표시된 서류는 반드시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영사확인]	세부 구분			비 고
		재외국민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1	입학원서	○	○	○	·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접수 후 출력
2	지원자 종합기록표	○	○	○	·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접수 후 출력
3	초·중·고 전 과정 성적증명서*	○	○		
4	초·중·고 재학사실증명서*	○	○		· 재학기간(연월일 명시)이 명기되지 않은 경우, school calendar 등의 학사일정 (학기 개시일~종료일)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제출해야 함
5	고교 졸업(예정)증명서*	○	○		
6	재외국민등록등본	○			· 해외 2개국 이상일 경우 해당국 모두 제출
7	여권 사본	○	○		· 해외 재학기간 중 여권번호가 변경된 경우, 구 여권과 신 여권 사본을 모두 제출
8	출입국사실증명서	○	○		
9	포트폴리오 (예체능계)	서류접수 기간 내에 본고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			
10	외국 초·중·고교 학적조회동의서	○	○		· 입학처 홈페이지 재외국민 자료실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11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	○		· 출입국관리법 별지 138호의 2 서식
12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13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	· 해당자에 한함
14	학력증명서 ※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	·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재학한 이력이 있는 학생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로 대신함 · 한국에서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를 합격한 학생은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증명서로 대신함
15	학교생활기록부			○	· 한국학교 재학사실이 있는자에 한하여 제출

· 공통사항

- ※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원본과 함께 한글 또는 영문번역 공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 교육부에서 승인한 재외한국학교의 재학관련서류[성적증명서, 재학사실증명서, 고교 졸업(예정)증명서]는 아포스티유 인증 및 영사확인 생략 가능. 단, 이외의 해외발급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필요함
- ※ 기한 내 서류 미제출자(예술디자인대학 포트폴리오 미제출자 및 서류 미비자 포함), 지원 자격 부적격자, 필기고사 및 면접고사 결시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됨

[자기소개서 견본 양식]

- * 자기소개서 작성은 유형 II (전 교육과정 이수자)만 해당됩니다.
- * 본 서식은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서접수 사이트를 통하여 입력하여야 합니다. (출력하여 제출하지 않음)
- * 반드시 한글로 기재해야 합니다.

자 기 소 개 서

■지원자 기재사항

지원모집단위	학부(과)		
성명		수험번호	
출신고교	고등학교 년 월 졸업[예정]		
최종학교			
소재국가			

■자기소개서 작성 유의사항

1. 자기소개서는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2020. 7. 20.(월) 10:00 ~ 2020. 7. 23.(목) 17:00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2. 자기소개서는 본교 소정의 양식에 맞춰 제시된 문항에 해당되는 사항을 작성하여야 하며, 지정된 분량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자기소개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해당 기관(학교 또는 관련 기관)에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4. 자기소개서는 사실에 근거하여 본인이 작성해야 하며, 대필 또는 표절 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합니다.
5. 지원자의 부모 및 친인척의 성명, 직장명 등의 인적사항은 기재가 불가합니다.

■지원자 확인 서약

본인은 건국대학교 재외국민과외국인전형에 지원하기 위해 사실에 입각하여 직접 작성하였고, 본 자기소개서에 대하여 허위사실의 고의적 기재나 대리 작성이 적발되는 경우 불합격, 합격취소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건국대학교 총장 귀하

1.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을 중심으로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800자 이내)

띄어쓰기 포함 800자 이내

2. 학교 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800자 이내)

띄어쓰기 포함 800자 이내

3. 지원전공을 선택한 이유와 대학 입학 후 학업 또는 진로계획에 대해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800자 이내)

띄어쓰기 포함 800자 이내

Ⅶ.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1. 서류는 동기우편을 통한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함. 사본제출이 불가피한 경우 서류접수 기간 내 서류 원본과 사본을 함께 지참하고 입학처를 직접 방문한 후 원본대조를 받아야 제출할 수 있음
※ 제 3기관에 의한 원본대조필 날인서류는 원본으로 인정하지 않음
2. 방문접수 시 서류목록 및 내용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므로 이에 대한 문의는 사전에 전화, 팩스, 홈페이지 Q&A 게시판 등을 통해야 함
3. 모든 제출서류는 서류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함. 단, 외국의 발급서류는 외국에서의 재학/재직/체류 중 발급받은 것도 유효함
4.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원본과 함께 한글 또는 영문번역 공증서를 제출해야 함
5. 제출된 서류는 어떠한 경우라도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의 <서류도착 확인>메뉴를 통해 서류를 제출한 다음날부터 제출 확인을 할 수 있음
7. 서류상 이름(영문 포함)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국 법원이나 공관장 발행의 동일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8. 지원자의 제출서류만으로 사실 확인이 어려울 경우 이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자는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9. 서류제출 기한 내 서류 미제출시 선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서류 미제출로 인한 전형료 환불은 불가함
10. 서류 제출절차 및 방법

입학원서 출력 → 제출서류를 순서대로 원서 뒤에 첨부 → 원서접수 페이지에서 **발송용 봉투표지 출력**(우편요금은 본교에서 부담) → 출력된 용지를 대봉투에 부착 → 우체국 동기우편 발송(또는 직접 제출)

※ 방문 제출처: (우 05029)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20 건국대학교 입학정보관 112호 입학홍보관

※ 우편 제출처: (우 05029)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20 건국대학교 입학정보관 103호 입학팀

※ 방문 접수 시에도 **발송용 봉투표지**를 반드시 출력 후 부착

11. 최종 합격자 서류제출 안내 ※ 기한: 추후 합격자 유의사항 참고

구분	최종합격자 중 졸업예정자		
	유형 I		유형 II
	지원자격 충족*	지원자격 미충족*	
졸업증명서	○	○	○
최종성적증명서	○	○	○
출입국사실증명서		○ (부,모,지원자)	○ (지원자)
재직(경력)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법인세납부증명서 또는 세금납부증명서		○**	

* 지원자격 (미)충족은 원서접수 당시 각 지원자격 조건을 충족했는지의 여부를 의미함

** P. 11 참고하여 각 세부구분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Ⅷ. 지원자 유의사항

1. 모집단위 및 지방방법

가. 제1지방만 지원할 수 있음

나. 한국국적을 지닌 복수국적자는 재외국민 요건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한국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는 외국인 요건으로 지원해야 함

2.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수시모집에서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초과 접수분에 대하여 지원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이를 유의하여 지원해야 함(타 대학에 지원한 횟수를 포함하며, 산업대학·전문대학에 지원한 경우는 제외)
- 지원자가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할 경우 초과 접수한 전형은 취소됨

가. 대학지원 방법 및 복수지원(6회 제한)에 관한 사항(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 1) 수험생은 수시모집에서 지원 대학 수와 관계없이 최대 6개 이내의 전형에 지원 가능하며, 6회를 초과하여 지원한 전형에 대해서는 지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음(단, 산업대학, 전문대학은 복수지원에 제한이 없음)
 - 전형이라 함은 재외국민과외국인전형,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교과전형, 논술전형, 특기/실기전형 등 정원 외 전형을 포함한 수시모집 모든 전형을 의미함(단,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전형 지원은 계수에서 제외됨)
 - 6회를 초과하여 원서를 접수한 경우 원서접수 시간 순서상 6회를 초과한 접수는 취소하며, 대학별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복수지원 위반사실이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될 경우 입학이 무효로 함
- 2) 하나의 전형 유형으로는 하나의 모집단위에만 지원 가능함
- 3) 수시모집의 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총원합격자)는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 4)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및 각종학교」 간에는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나. 등록 및 이중등록 금지에 관한 사항(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 1) 모집시기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등록확인예치금 납부 포함)해야 함
- 2)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개별 대학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검색분석하여 이중등록 금지를 위반한 자의 명단을 각 대학에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대학은 해당자의 입학을 지체 없이 무효로 함
- 3) 수시모집 합격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 내에만 등록 처리하며, 수시모집에 복수로 합격한 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 내에 1개 대학에만 등록해야 함(등록이란 문서등록 또는 등록확인예치금을 납부한 상태를 의미함)
- 4) 수시모집에서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을 한 자가 다른 대학의 수시모집에 총원 합격하여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 등록한 대학을 포기한 후, 총원합격 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대학입학전형 원칙

가. 입학전형 성적 및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나. **일단 접수(결제)가 완료된 후에는 지원사항 변경, 지원 취소 및 전형관련 서류 반환이 일체 불가하며 각종 고사에 결사하였을 경우 선발에서 제외함**

다. 입학원서 작성 오류, 기재사항 누락, 본교에서 요구한 서류의 미제출, 제출 서류의 내용미비 및 기타 수험생의 과오 등으로 인한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본교의 처리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제출서류에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위조·조작한 경우 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함

마. 본교의 모집단위 및 전공 명칭과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은 2021학년도 편제 및 정원 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재외국민과외국인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은 변경된 편제에 따라야 함

바. 지원자가 성적 석차 순으로 모집인원 내에 해당하는 경우일지라도 그 성적이 본교에서 기대하는 학력수준에 현저하게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대학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전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자 등은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사. 부정당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입학 무효 처리되며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상기의 사유로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자가 납부한 등록금과 입학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아. 기타 본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관련지침, 본교의 재외국민과외국인전형 사정원칙 및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4. 기타 유의사항

가. 지원자는 재외국민과외국인전형 모집요강 및 본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수험생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불이익의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나. 합격자 발표 등 전형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다. 합격자는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표하며, 합격통지서는 합격 확인시 출력 가능함.

라. 합격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통보없이 해당 합격을 취소함

5. 입학원서 작성 안내

가. 입학원서 접수는 인터넷으로만 실시하며 별도의 원서교부나 방문접수는 시행하지 않음

나. 인터넷 원서접수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접수시간 종료 전까지 반드시 작성, 저장 및 결제가 이루어져야 함. 접수시간 종료로 인한 원서 미접수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접수시간은 한국시간 기준임)

다. 원서를 작성한 후 전형료를 결제함(원서접수 업체)

※ 전형료 결제 완료 후에는 작성내용 변경 및 원서접수 취소, 전형료 환불이 일절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접수(결제)해야 함

라. 한글과 영어를 제외한 언어를 입력하면 출력 시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한글 또는 영어를 사용하여 기재해야 함

마.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입력란에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입해야 함.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아래 [예]를 참조하여 앞자리 6자리는 생년월일을, 뒷자리 7자리는 성별에 따라 남자는 '7' / 여자는 '8' 을 기입하고 나머지 번호는 모두 '0' 으로 기입해야 함

–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할 때

[예] 2002년 5월 15일 남자: 020515-7000000 / 2002년 5월 15일 여자: 020515-8000000

바. 원서에 사진파일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3cm×4cm 규격의 사진파일(jpg)을 미리 준비해야 함

사. 지원 자격 기간 내 본인 또는 보호자의 여권번호가 여러 개일 경우 최근 발급 순서대로 국적과 여권번호를 모두 입력해야 함

아. 전형과정에서 연락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연락 가능하도록 국내·외 연락처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함

자. 지원자 종합기록표 작성 시 학교명, 학년과 학기는 초등학교 ~ 최종 재학 학교까지 순서대로 입력해야 함

6. 추가합격자 발표 및 등록(미등록 충원)

- 원서접수 시 등록한 연락처(본인/보호자)가 변경된 자는 반드시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을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연락처 02-450-0007)
- 재외국민과외국인전형 합격자가 추가합격자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추가합격을 통보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해야 함

가. 유형 I 은 합격자의 미등록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학과별 최대모집가능인원 범위 내에서 단과대학별 입학고사 성적순으로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단, 유형 II, III 의 수의예과는 추가합격자 선발 시행)

나. 추가합격자 발표 및 등록일정 ※ 세부(변경)사항은 추후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지

차수	발표일시	등록일시	발표방법
1차	2020. 12. 31.(목) 09:30 예정	1차 발표 후 ~ 2020. 12. 31.(목) 16:00	입학처 홈페이지 공지
2차 이후	2021. 1. 1.(금) ~ 1. 4.(월) 21:00	2021. 1. 1.(금) ~ 1. 5.(화) 16:00	

다. 추가합격자 발표 유의사항: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한국대학교육협의회)

- 1) 2021. 1. 4.(월) 21:00 이후에는 추가합격 통보를 할 수 없음
 - 2) 추가합격자 발표는 본교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지원자는 발표일을 사전에 확인하고 발표기간 내 추가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3) 지원자는 원서접수 시 등록한 연락처(본인/보호자)로 연락이 가능하도록 대기해야 하며 수신자 부재, 연락처 오류 등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 4) 추가합격자 중 지정된 등록기간 내에 미등록할 경우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통보 없이 해당 합격을 취소하고 차순위자에게 합격을 통보함
- ※ 미등록 충원 마감일 이후에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 대학에는 미충원 인원이 발생하고 예비합격자에게는 충원합격의 기회가 차단되어 결과적으로 다른 수험생의 입학기회를 박탈하게 됨

7. 등록포기(등록예치금 환불) 안내

등록포기(등록예치금 환불) 신청 기간: ~ 2021. 1. 4.(월) 16:00까지

※ 기간 경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 신청방법

신청방법	비고
-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등록포기 - 등록포기(등록예치금 환불) 신청 시 보안카드가 필요함 ※ 인터넷 신청이 불가한 경우: 본교 입학처 방문 또는 팩스 신청 (Fax: 02-450-0077)	보안카드: 등록포기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하여 입력해야 할 번호가 기재된 카드로 원서접수 사이트에 로그인 후 출력 가능

※ 세부(변경)사항은 추후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지함

IX. 전형료 및 환불 안내

※ 전형료(일괄 납부)

구분	전형료	비고
면접 응시 대상 지원자	200,000원	예체능 계열 지원자와 '전 교육과정 이수자' 중 수의예과 지원자
면접 응시 대상 이외의 모든 지원자	150,000원	

* **북한이탈주민은 전형료가 면제됨**

* 면접 응시 대상 지원자 중 1단계 탈락자는 50,000원이 반환됨

※ 원칙적으로 접수가 완료된 이후 지원을 취소할 수 없으며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단,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에 따라 아래의 전형료 환불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전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며, 환불되는 전형료는 원서접수 시 기재한 방법으로 반환함

반환 사유	반환액
응시자의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액 전액
본교의 귀책사유	전형료 전액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전형료 전액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입학 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단, 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전형료 반환 시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음

※ 상기 기준 외 반환기준

- 상기 반환 사유 이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본교 입학처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전형료 전부 또는 일부 반환함
- 단순 번심, 전형 일정 중복, 결시 등 각종 개인사유는 반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전형료 환불 신청 시기	환불 금액
가. 원서접수 마감 이전	전형료에서 원서접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나. 원서접수 마감 후 일주일 이내	전형료에서 원서접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의 50%
다. 원서접수 마감 일주일 경과 후 ~ 전형 1일 이전	전형료에서 원서접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의 25%
라. 전형별 고사일 이후	없음

※ 전형료 비례 환불 안내

- 본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5항 및 「고등교육법」 제42조의3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할 경우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할 예정임
- 입학전형료 반환 방법은 원서접수 시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함
 - 반환대상자가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한 금융기관의 환불계좌로 이체
 - 본교 직접 방문
- 반환 방법 중 반환 대상자가 금융기관의 환불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함. 또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음